

2003년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통합지도·점검 추진방향

환경부에서는 하나의 사업장내에 여러개의 배출시설이 있는 경우 대기, 수질, 폐기물, 유독물시설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환경오염 매체별로 따로따로 여러차례에 걸쳐 단속을 해왔으나 2002년 10월 14일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등에관한통합지도·점검규정』을 제정하여 여러가지 배출시설들을 한꺼번에 점검토록 하고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지도·점검업무 위임 이후의 추진사항과 '03년도 통합지도·점검 중점 추진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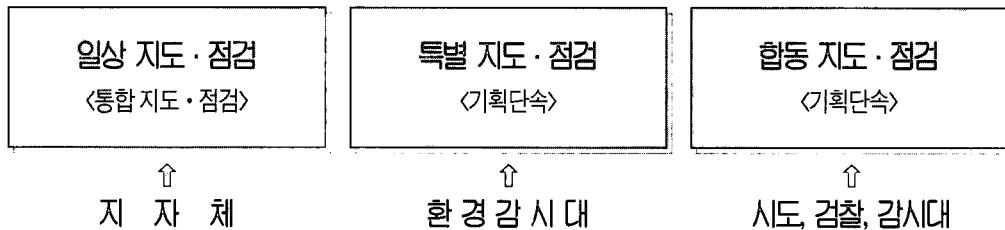
〈 편집부 〉

I. 지도·점검업무 위임 이후의 추진사항

- ▶ 산업단지내 배출업소에 대한 관리업무의 시·도 위임('02.10)
 - 전국 137개 산업단지 13,380개 사업장 관리업무 이관
 - 환경부 이체인력 86명과 행자부 순증인원 13명 등 99명 시·도에 증원
 - 행자부에서 시·도의 배출업소 관리인력 추가 증원 조치('03.2)
 - 지도·점검인력 71명과 검사인력 57명 등 128명
 - ※ 배출업소 관리업무 시·도위임에 따라 총 227명이 증원
- ▶ 환경부 중앙환경감시기획단 설치 및 환경감시대 정규화(46명)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감시·단속업무의 종합조정
 - 상수원 유역, 환경오염이 심각한 지역, 환경법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업소 등에 대한 특별지도·점검업무 수행
- ▶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등에관한통합지도·점검규정 제정('02.10.14)
- ▶ 환경감시대와 지자체의 합동단속('02.10~11월)
- ▶ 지도·단속기관간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한 합동연찬회('02.10.17~18)
- ▶ 지자체 실무공무원 업무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 대기, 수질, 폐기물 등 점검관련 공무원 순회교육('02.12~'03.1, 642명)
 - 대검찰청·환경부 합동 환경특사경 특별교육('03.2, 635명)
 - 환경사범수사 우수사례 발표회('02.12.27)

II. 통합지도·점검 추진 체계

- ▷ 대기·수질 등 배출시설들을 사업장별로 한번에 통합해서 점검
- ▷ 지도·점검 체계



III. '03년도 통합지도·점검 종합 추진방향

1. 지자체가 배출업소 관리업무를 전담하여 추진

- ▷ 배출업소에 대한 허가(신고), 지도·점검, 행정처분 등 모든 배출업소에 대한 일체의 환경관리업무를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수행

2. 배출업소에 대한 정기지도·점검은 통합지도·점검 방식으로 실시

- ▷ 대기, 수질 등 배출시설들을 사업장별로 한번에 통합해서 지도·점검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팀제 운영 등 단속인력을 적절히 배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

3. 배출업소 지도·단속 성과 제고

- ▷ 배출업소에 대한 정기지도·점검기준 준수, 통합지도·점검 실시, 점검결과에 따른 업소별 등급 조정 실시 등

4. 환경특별사법경찰 운영 강화

- ▷ 환경사범수사 전담요원 전문성 향상

- 국립환경연구원의 "환경사범수사 실무교육과정" 등 환경범죄수사 기본교육 이수
- 환경특별사법경찰의 수사 우수사례 발표회(12월)

- ▷ 기관별 환경특별사법경찰의 수사목표율 상향 조정

- 시·도 : 고발건수 대비 30% 이상 수사
- 환경감시대 : 고발건수 대비 70% 이상 수사
- 유역(지방)환경청(폐기물분야) : 고발건수 대비 30% 이상 수사

- ▷ 기관별 환경사범수사 전담체계 구축·운영

- 수사 전담요원 지정 및 「수사전담팀」구성·운영
- 환경사범 「조사실」지정·운영

환경보

- ▶ 환경범죄 수사기관간 협력체계 강화
 - 검·경찰등과의 정례모임 추진
 - 자체에서 자체 수사가 곤란한 경우 환경감시대에 고발 조치

5. 4대강유역 환경감시 네트워크 구축

- ▶ 4대강 유역별로 효율적인 환경감시를 할 수 있도록 시·도, 환경감시대 등 환경단속 유관기관간 모임을 정례화
 - 지역환경문제 협의 및 단속기관간 환경감시 정보 공유
 - 상수원 상류지역 소재 배출업소, 음식점, 축산시설 등 오·폐수처리시설 중점 단속 논의 등

6. 단속기관간 합동단속 확대

- ▶ 시·도와 환경감시대 합동으로 취약지역에 대한 중점 기획단속 실시
 - 합동단속시 환경사법에 대하여는 환경감시대가 수사 전담
- ▶ 시·도와 시·군·구간의 합동단속 실시 확대
 - ※ 배출시설 중복점검에 대한 정책훈선을 배제하기 위하여 자체는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지도·점검, 행정처분 등 일상적인 업무를 담당, 환경감시대는 상수원 유역 및 오염이 심각한 지역, 환경법령 반복 위반 업소를 대상으로 기획단속 위주의 특별지도·점검 실시

7. 지역주민과 시민단체의 환경감시활동 적극 참여 유도

- ▶ 반복적인 민원유발 사업장, 다수인 민원 발생사업장 등에 대한 지도·점검시 지역주민, 관계전문가, 환경단체 등의 참여를 확대하여 단속의 투명성 제고
- ▶ 환경신문고(신고전화 128) 및 환경오염신고 포상제도 활용
 - 자체의 경우 관할 사업장에서 발생한 환경오염신고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자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신고포상금제 활성화 대책 강구(환경오염행위신고보상조례 제정 등)
- ▶ 오염우심지역, 민원다발지역 등에 지역주민, 환경단체,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자율환경감시체계를 구축·운영

8. 환경관리가 취약한 중소기업 기술지원 강화

- ▶ 환경관리가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관계전문기관 또는 민간전문가의 협조를 받아 공정개선 또는 방지시설의 설치·보완, 환경개선자금 용자지원 안내 등 기술지원 계획을 수립
 - 영세사업장으로 배출허용기준 초과·개선명령, 조업정지 등이 반복적으로 이루어 지는 사업장을 우선하여 기술지원
- ※ 기술지원 전문기관(예) : 환경관리공단,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등

9. 배출업소 지도·점검 실적 등 관리실태 평가

- ▶ 배출업소 지도·점검계획 수립단계부터 사후관리에 이르기 까지 단속실적, 행정처분 등 관리실태를 분석·평가하여 우수기관은 기관표창 등 인센티브 부여, 미흡한 기관은 보완 조치